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2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4.

발 의 자 : 김영진 · 채현일 · 이연희
백혜련 · 김남준 · 신정훈
노종면 · 김 윤 · 이해식
차지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조세 탈루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면서, 탈세제보의 경우 40억원,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의 경우 30억원, 그 밖의 경우에는 20억원을 포상금 지급한도로 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탈세 및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·복잡화되고 그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률적인 포상금 지급한도는 고액 탈세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의 제보와 은닉재산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. 이에 탈세제보 및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 등에 대한 법률상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여 제보·신고의 유인을 높이고 탈세 및 체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한편, 현행법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

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「국
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에
대해서는 별도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. 해외신탁을 이
용한 재산은닉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고의무의
이행을 담보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 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
를 제공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,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
정보로서 과태료 부과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포상금 지급
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규정함으로써 해외신탁에 대한 관리와 조
세탈루 방지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84조의2제1항 및 제2항).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20억원(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)의 범위에서 포상금”을 “포상금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불이행”을 “불이행 및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불이행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2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
제8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제1호 및 제6호”를 “제1항제1호, 제6호 및 제6호의2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1항제6호의2의 경우: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)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4조의2(포상금의 지급) ① 국 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 억원(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40억원으로 하고,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)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 급할 수 있다. 다만, 탈루세액, 부당하게 환급·공제받은 세액,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 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 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 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 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	제84조의2(포상금의 지급) ① --- ----- -----포상 금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불이행 및 해외신탁 명세 제출의무 불이행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1. ~ 6. (현행과 같음) 6의2. 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

7. (생 략) ② <u>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</u> <u>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</u> <u>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.</u> 1. · 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③ ~ ⑥ (생 략)	<u>자료를 제공한 자</u> 7. (현행과 같음) ② <u>제1항제1호, 제6호 및 제6호</u> <u>의2</u>----- ----- -----.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제1항제6호의2의 경우: 「국</u> <u>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」 제</u> <u>58조제3항에 따른 해외신탁명</u> <u>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</u> <u>로써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</u> <u>과태료 부과</u>의 근거로 활용할 <u>수 있는 자료</u>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